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nd Rolls of e-Trade

김장호(Jang-Ho Kim)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
(주저자)

최관선(Kwan-Seon Choi)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무역원활화 논의 및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내용 | ABSTRACT |
| IV.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 | |

국문초록

국제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 관련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제1절과 제2절에 다수의 조항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서류는 정보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전자무역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간에 교류가 요구된다.

주제어 : 무역원활화, 전자무역, FTA, WTO, 국제통상환경

I. 서론

현재까지 국제무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10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협정을 맺은 GATT 체제를 거쳐,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ATT체제의 주요 협정은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 완화, 회원국간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관세 차별을 제거하자는 합의하에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공황기에 국가간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을 통한 국제무역의 파국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GATT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1944년 브래튼우즈협약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The World Bank) 기구와 더불어 전후 세계경제질서의 주요한 3대축중의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GATT와 WTO라는 국제무역환경의 틀 속에서 2011년 MENA(중동·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민주화사태, 일본 대지진,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2011년 12월 5일)하였으며, 1964년 무역 1억 달러 달성 이후 47년 만에 5,000배 이상 증가 하였다.¹⁾ 1957년 공업발전시책을 시작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경공업제품 및 섬유류와 가발의 수출, 1980년대에는 수출다변화를 통해 선박, 음향기기 등, 1990년대에는 의류를 비롯하여 전자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영상기기, 컴퓨터 등, 200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정보기술(IT) 제품이 수출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2011년에는 선박류, 석유제품, 자동차 등이 반도체 및 IT제품과 더불어 주요한 무역 상위 품목으로 자리 매김하였다.²⁾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무역 성장의 역사이며 과거보다 다양한 지역, 국가 그리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와 관련된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전자무역은 무역원활화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관련 시스템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관련기술과 활용 노하우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품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조상현, 제현정, 홍지상, “2011년 수출입 평가 및 2012년 전망”, 『IIT Trade Focus』, Vol.10, No.58, 한국무역협회, 2011.12, p.7.

2) 이유헌, “이제는 2조달러를 향해 힘찬 출항”, 한국경제, 2011년 12월 12일, <http://www.hankyung.com>, 2015년 1월 21일 참조.

II. 무역원활화 논의 및 선행연구

1. 무역원활화의 개요

1) 무역원활화 정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종합 하면 “무역과 관련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관련 절차나 제도 등을 간소화·표준화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와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개념이 비교되는 ‘무역자유화’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 완화에 초점에 맞추어져있는 반면,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표준화를 통해 무역비용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³⁾

무역원활화에 대한 통일되고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 다소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범위도 약간씩 다르다. Staples(2002)에서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의 기본인프라, 즉 통상과 무역관련 정책의 집행, 규제와 행정에 관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흐름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 무역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무역절차의 단순화(simplification), 통일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를 통하여 무역절차상의 장벽(Trade Procedure Barriers: TPBs)의 장벽을 제거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 무역자유화를 촉진과 그 이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한 류병윤(2014)의 정의를 가장 보편적인 간주로 본다.⁵⁾

3) 고일훈,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14-015, 2014.12, p.1.

4) Staples, Brian Rankin, “Trade Facilitation: Improving the Invisible Infrastructure,”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 and Philip English eds.(2002)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p.140., 정재완 외,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한국관세학회, 2014, p.16. 재인용.

5) 류병윤,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홍익법학 15권 3호, 2014, p.573.

〈표 1〉 무역원활화 정의

| 기 관 | 정 의 |
|--------|---|
| WTO |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에 대한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
| UNCTAD | 법령과 규정의 조화, 절차와 문서의 단순화, 운송 정보 통신 체제 등 무역 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한 무역효율성 증대 |
| OECD | 국제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집, 제출, 전달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례, 형식의 단순화와 조화 |
| WCO |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
| UN/ECE | 절차 및 정보흐름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한 국제거래의 원활화 |
| APEC | 세관행정, 표준·기술규정,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등 무역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및 행정상 장애의 간소화 |
| KOTRA | 무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및 인프라를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및 활동 |

자료 : 고일훈, 전계자료, p.1. 이명현 외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p.3 재인용하여 작성함

2) 무역원활화의 효과

국가간 거래의 장애요인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는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와 같은 직접적인 장애요인과 더불어 재화와 용역에 수반되는 운송보험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은 국가간 재화와 용역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어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요구되었으며 무역원활화가 비용에 대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연구는 김상겸·박인원(2001)이 무역비용을 거래비용+정책비용+무역원활화 비용으로 정의하고 무역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무역원활화의 효과는 첫째,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를 비교하여 무역원활화가 무역자유화의 보완재로서 일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며, 둘째, 기업내 무역의 증대 및 국제간 분업의 확대와 같은 생산성 증대효과를 통해 물류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비즈니스 기회 증가와 무역경쟁력 강화, 세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셋째,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기여,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개방적 지역주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반면 무역원활화를 통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원활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 자본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고정비용이 요구되며, 둘째, 국가별 기준의 차이가 있어 국가별 관행, 제도, 인프라, 인력, 안전 및 기술 등 기준의 차이를 균등하게 적용하는 한계가 있으며, 셋째, 무역자유화와 달리 무역원활화는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계량화의 한계가 있으며, 넷째, 국가별로 무역원활화의 정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어 무임승차와 같은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⁶⁾

따라서 무역원활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진비용과 정책 및 기준의 국가간 조율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투입과 산출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2. 무역원활화를 통한 개선분야 연구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관부문의 개선, 전자적 수단부문 개선, 정책 및 제도 부문 개선, 무역원활화 효과분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통관부문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신정환(2004)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제도 선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속정확한 통관물류를 위한 세관행정의 당면 과제를 종합 분석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기본전제인 통관절차의 단순간소화를 강조한 나머지 부정·불법 통관과 사후관세추징액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 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통관 적법성 확보문제가 제기 되었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통관절차의 단순화는 대물관리체제의 유지발전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이라는 균형 있는 관세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관세행정은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구축과 위험관리기법의 지속적 발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⁷⁾ 양준석(2006)은 국제무역에서 복잡한 통관 절차를 국제교역 원활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무역원활화를 WTO 협상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다자적 시장개방으로 세계의 관세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각 국가들의 법령, 규제, 관례, 통관절차, 행정절차, 검사절차, 물품이나 서비스 표준과 기술 등이 관세보다 더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복잡한 통관절차에 대한 경제적 비용에 관한 OECD, APEC, EC 등의 국제기구들의 조사발표 내용을 토대로 통관절차나 무역에 관련된 규제들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WTO 협상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가 WTO의 공식협상과제가 된다면 실질적인 무역원활화의 추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⁸⁾

둘째, 전자적 수단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김선옥(2005)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전자무역하에서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제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역원활화 추진의 전제조건을 국제표준채택, 과도한 무역서류 또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절차의 축소 또는 폐지, 정보의 단일창구(Single Window), 일관통관절차, 통일된 서류양식의 채택, IT를 이용한 자동화 체제구축 등으로 요약하였다. 이와 함께 개도국들의 무역원활화의 조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

6) 김상경·박인원,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효과", 정책연구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63-75.

7) 신정환, "무역원활화와 세관의 역할 및 발전전략",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04, pp.43-63.

8) 양준석,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59-80.

한 기술지원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이남구(2006)는 WTO 차원의 무역원활화 논의를 주요 분야 별로 검토·분석하는 한편, 향후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WTO 무역원활화 논의가 수렴되고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절차, 간소화된 거래절차, 거래비용 절감 등은 아웃소싱, 생산공정의 네트워크, 그리고 적시공급(Just-In-Time) 등을 중시하는 주요 기업의 해외활동을 한층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정보요건의 표준화,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등 전자무역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WTO 각 회원국이 전자무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러한 전자무역체제를 서로 연계·조화시키는 작업이 WTO 무역원활화 논의 및 이행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류병윤(2014)은 무역원활화협상의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을 위한 연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무역원활화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안중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도국의 기술적 지원과 능력 배양 지원의 방식으로 보급할 필요성과 전자적 통관 기반과 프로그램 구축, 무역절차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공표를 위한 정보 통신 기반 지원 등을 개도국에 대한 ODA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¹¹⁾

셋째, 정책 및 제도부문 개선으로 양준석(2005)은 WTO의 최근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무역원활화와 관련되어 있는 GATT 제10조의 내용을 고찰하면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제안한 각종 규제투명성 조치 및 주요 회원국들의 동향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특히,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한국은 무역원활화가 국제무역, 그리고 한국무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대외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국내 투명성을 제고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¹²⁾ 임혜준(2011)은 무역원활화 협상의 주요 의제 및 쟁점 사항으로 정보 공표 및 접근, 사전판정, 상품의 통관과 반출, 영사절차, 수출입관련절차, 통과와 자유, 세관협력, 특별우대조치로 분류하고 무역원활화를 통해 이익이 큰 만큼 회원국간에 이견을 최소화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역원활화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효과부분 뿐만아니라 투자부분인 관련 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에 대한 비용 측면의 상호 비교 연구를 제안하였다.¹³⁾

9) 김선옥,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원활화 추진",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pp.163-181.

10)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6, pp.139-162.

11) 류병윤, 전계연구, pp.573-602.

12) 양준석, "WTO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투명성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5, pp.53-75.

13) 임혜준,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의 주요 의제와 쟁점",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pp.1-24.

넷째, 무역원활화 효과분석에 대해서 안경애·조미진(2013)은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으며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변수로 국경효율성을 나타내는 BTE(Border Transport Efficient), 세관환경을 나타내는 CE(Customs Environment), 물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를 나타내는 PI(Physical Infrastructure)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에 활용되는 정보 통신 및 관련 기술의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 분석하고, 위의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 모두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양국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순찬·박찬일(2013)은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의 주요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기 별도의 주제로 연구 되었고 동일한 모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상호 비교분석한 연구가 없는 것에서 출발하여, DDA 무역 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M)모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무역원활화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국가의 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¹⁴⁾ 김태영·안경재(2014)는 WTO의 무역원활화의 무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공간중력모형(Spatial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무역 상대국의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가 향상될수록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할 경우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 향상이 수출증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¹⁵⁾ 정문현(2014)은 APEC 국가 내에서 무역원활화가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동질상품군과 차별상품군 간에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무역원활화 관련 요소로서 수출국의 통관시간, 물류운송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는 차별상품군의 수출에, 수입국의 통관시간은 동질상품군의 수출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출국의 무역원활화가 개선될 때 APEC 국가의 수출이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칠레와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동질상품군에 비해 차별상품군의 수출이득에 상당히 더 큰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¹⁶⁾

위의 연구와 더불어 정혜선(2014)과 고일훈(2014)은 WTO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에 따라 협

14) 박순찬·박찬일, “동아시아의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동북아시아경제연구』, Vol.25. No.2.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pp.1-29.

15) 김태영·안경재, “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39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14, pp.161-183.

16) 정문현, “무역원활화가 상품의 특성별 무역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Vol.39. No.2, 한국무역학회, 2014, pp.193-222.

정의 주요내용, 체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그리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세청(2014)¹⁷⁾은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의 의의와 조문별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혜선(2014), 고일훈(2014), 관세청(2014), 그리고 전자거래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내용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III.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상과정

1) 협상의 출범배경

2차대전 이후 GATT 출범을 통해 전 세계는 개방과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한 UR 협상(1986~1994)은 총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을 크게 완화시켰다. 하지만, 무역비용은 고비용 구조가 지속¹⁸⁾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WTO 뉴라운드 협상 모멘텀 확보를 위한「싱가폴 이슈」에 무역원활화를 포함시켰다. 1차 WTO 각료회의에서(싱가폴, 1996) 채택된 협상 이슈는 첫째, 무역과 투자, 둘째, 무역과 경쟁, 셋째, 정부조달 투명성, 넷째, 무역원활화 등이다. 당초 뉴라운드에서는 UR 협상에서 합의되지 못해 차기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던 이슈인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서비스시장 개방 등 기 설정의제(Built-in-Agenda; BIA)만 다루기로 하였으나, BIA에만 집중할 경우, 국내 반대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EU, 일본 등 선진국의 요청으로 싱가포르 이슈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¹⁹⁾

2) 협상의 경과

(1) 여건조성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작업계획이 마련된 분야로서 투자, 경쟁정책, 정보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가 태동하였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차후 개최되는 5차 각료회의(칸쿰)가 정하는 협상방식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무

17)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2014.11.

18) UNCTAD의 2001년 기준, 선진국의 관세율은 3.1%까지 하락 vs 무역비용은 전 세계 교역액의 최대 15%

19) 고일훈, 전계자료, pp.1-6.

역원활화 논의를 GATT 10조, 8조, 5조의 내용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에서 동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결렬되었고, 향후 협상은 싱가포르 이슈의 일괄타결 방식을 포기하고 이슈별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싱가포르 이슈의 4개 분야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싱가포르 이슈의 규범화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2004년 7월 WTO 일반이사회는 싱가포르 이슈 4개 분야 중 무역원활화 분야만 협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2004년 8월에 무역원활화 협상이 본격적 출범하게 되었다.²⁰⁾

(2) 협상의 진행

2001년 11월 10~13일 동안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일명‘도하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 선언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협상을 가졌으나 회원국들간에 기존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한 끝에 극적으로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에 관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²¹⁾의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으로 불려왔던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게 될 다자간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²²⁾ 2001년 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가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싱가포르 이슈²³⁾가 포함될 경우,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개도국의 반대로 협상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제5차 WTO 각료회의(2003.9. 칸쿤)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하였다. 이후 DDA 협상 재개를 위해 2004년 8월 WTO 일반의사회에서 채택한 「기본골격합의문(Framework Agreement)」²⁴⁾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발리패키지(Bali Package)의 주요내용은 조기수확(Early Harvest)²⁵⁾ 대상으로 협의해 온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부분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무역관련 규정을 명확화, 세관협력, 개도국 특별대우 등 기존내용을 재

20) KOTRA,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KOTRA 통상전략팀, 2004.9, pp.3-4.

21)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 2001.

22) 고준성,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KIET 산업경제, 2002년 1월호, 산업연구원, 2002, p.27.

23) 싱가포르 이슈(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 진행키로 합의

24) 기본골격합의문(Framework Agreement)에 명시된 「무역원활화」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의 범위는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며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상호간 협력을 확대한다. 둘째, 특별대우 조항으로 통관절차 개선 등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개도국들은 협상결과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도국우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협상지원 조항으로 협상 중 WCO(세계관세기구)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협조를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넷째, 협상타결의 방법으로 무역원활화 협상은 다른 DDA 협상 과제와 함께 ‘일괄타결’의 일부로 간주한다.

25) 조기수확 : DDA 협상을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새로운 협상타결 방식

확인하고 WTO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정문의 최종 확정 및 채택을 2014년 7월에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첫째, 무역관련 규정 명확화에서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무역규정의 공포 및 시행) 등 GATT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을 합의하였다. 둘째, 세관협력분야에서는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 세관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셋째, 개도국 특별대우에서는 협정상의 의무행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능력을 배양강화한다. 하지만 발리패키지 합의내용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의정서를 채택키로 하였으나, 무역원활화 협정과 식량안보 이슈를 연계한 인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인도의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인도 간 이견을 2014년 11월 13일에 해소하고 인도는 2015년 12월까지 영구적인 식량안보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제11차 각료회의(2017년)까지 영구 해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잠정조치(WTO 제소 자제)가 지속됨을 명확히 하였다.

(3) 협상의 타결

잔여쟁점 해소 이후 지난 2014년 11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하였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규범(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향후 WTO 회원국(160개국) 2/3의 수락 통해 ‘무역원활화’ 협정이 2015년 7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무역원활화 협정 추진경과

| 일 자 | 추진경과 |
|------------|---|
| 1996 |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포르) : 상품무역이사회 논의 결정(‘싱가포르 이슈’) |
| 2001.9 |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 : 5차 각료회의 이후 명시적 합의 하에 협상 개시를 규정, 구체적 협상 범위 합의(GATT 5조 8조 10조) |
| 2003.8 |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 : 각료합의 실패로 협상 개시여부 불투명 |
| 2004.7-8 | WTO 차원의 협상 개시 노력으로 7월 ‘July Package’ 타결 및 8.1일 공식협상 개시 |
| 2013.12.7 | 제9차 WTO 각료회의(발리) : 협상 타결(‘Bali Package’에 포함된 3개 부문의 일부) |
| 2014.1.31 | WTO내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CTF) 설치(의장 : 필리핀 대사) |
| 2014.5-7 | 협정문 법률검토 완료 및 공식 언어본(영어, 불어, 스페인어) 채택(CTF) |
| 2014.7.22 |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지원기금(TFAF) 설치 공식 발표 |
| 2014.7.31 | WTO 협정문 부속서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실패(인도의 채택 거부) |
| 2014.11.13 | 미국-인도 간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동의 합의 |
| 2014.11.26 | 개정의정서 최종문안 확정(CTF) |
| 2014.11.27 | WTO 협정문 부속서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WTO 특별 일반이사회) |

자료 : 정혜선,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공식 개정의정서 채택과 기대효과”,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77, 한국무역협회, 2014.12.16., p.2.

2. 협정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무역원활화 협정은 비차별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공표,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제공,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기존 GATT 조항에 비해 명확한 원칙을 담고 있다. 다음의 <표 3>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 WTO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전문 | 협정의 법적 정당성, 범위, 무역원활화의 필요성 및 개도국 지원 원칙 천명 |
| Section I 이행·의무 | -GATT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개선 및 명확화 -GATT 제8조(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의 개선 및 명확화 -GATT 제5조(통관의 자유)의 개선 및 명확화 -신규도입(세관협력) |
| Section II 개도국/최빈개도국 특별대우 | -일반원칙 -의무의 종류 및 이행, 이동 등 · A의무 : 즉시이행 · B의무 : 일정기간 후 이행 · C의무 : 일정기간 후 이행 -의무이행을 위한 원조 및 원조를 위한 정보제출 |
| Section III 제도규정/최종조항 | -제도규정 : 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국가별 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또는 유지) -최종조항 : GATT 1994 및 SPS/TBT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

자료 : 정혜선, 전계자료, p3, 정재완 외, 전계자료, p2.를, 참조하여 작성함.

정보의 공표는 통관절차, 환적절차, 행정심판제도, 발효 중인 FTA, 특혜무역협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었다.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에서는 수수료 및 부과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거래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 및 공표하여 정기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평균반출시간을 국가간 비교 및 무역원활화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식 협정문은 협정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을 시작으로, 이행 의무를 규정한 Section I, 개도국/최빈개도국의 Section I 이행 관련 특별대우를 명시한 Section II와 제도규정 및 최종조항을 담은 Section III로 구성되어 있다.

2) 무역원활화 협정 전문

무역원활화 협정 전문에는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 라운드와 관련하여, 도하 각료 선언 제 27항과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도하작업계획 결정 부속서D 및 홍콩 각료 선언 제33항과 부속서 E에 포함된 위임 및 원칙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GATT 1994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특히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의 특정한 필요를 인정하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무역원활화 및 세관 준수 문제에 관한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 회원국의 이행의무 규정

제1절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핵심조항으로 회원국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GATT 제10조, 제8조, 제5조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한다.

첫째, 제1조~제5조는 GATT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시행) 개선 및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항이다. GATT 제10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공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정보를 공표하는 매체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하고 여타 회원국·수출입업체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의처를 설립할 것, 둘째, WTO에서 이미 의무화한 원산지 사전판정 외 관세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판정을 추가하며, 셋째, 재심·상소 절차 관련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 및 구체적 시한을 규정한다.

둘째, 제6조~제10조는 GATT 제8조(수출입 수수료, 절차)의 개선 및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통관절차, 세관협력 등 세관행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의 핵심 조항이다. 특히, 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 제10조 수출입 통관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제5조의 조항들이 다소 추상적인 것과 달리 동 조항들은 매우 구체적²⁶⁾으로 기술되어 있다.

셋째, 제11조는 GATT 제5조(통과의 자유)의 개선 및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통과화물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최소화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출입업자 및 수송업체들이 가장 효율적인 통과노선을 사용할 권리 확인 및 보증금에 대한 원칙을 추가하였다.

26) 구체적 내용은 ① 화물 도착 전 심사와 사후 심사에 대한 내용 규정, ② 전자지급 의무화, ③ 통관서류 간소화 및 국제기준 사용 권장, ④ 일시 반입상품에 대한 규정

〈표 4〉 무역원활화 협정 제1절(의무이행)의 주요내용

| 구분 | 조항 | 주요내용 |
|---|------------------------------------|---|
| GATT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개선 및 명확화 |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 | 공표, 인터넷을 통한 공표, 질의처 설치 등 |
| | 제2조 시행 전 의견제출 기 회, 정보 및 협의 | 법령 시행 전 공표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
| | 제3조 사전심사 |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제공 |
| | 제4조 불복절차 | 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 |
| | 제5조 공정성, 비차별, 투명 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 제고된 통제 및 조사에 대한 통보 유치, 시험 절차 |
| GATT 제8조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개선 및 명확화 | 제6조 수출입 관련 요금 치 수수료 |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관세법 위반시 벌칙규정 |
| | 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 | 도착전 처리, 전자적 납부, 반출 및 제세 분리, 위험관 리, 통관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화물,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 등 |
| | 제8조 국경기관 간 협력 |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기관 간 협력 |
| |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 |
| | 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 련 절차 | 절차 및 서류 요건, 사본의 수용, 국제표준의 사용, 단일 서류접수창구, 선적전 검사, 관세사의 사용, 공통 국경절 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거부된 상품, 일시수입 및 역 내외 가공 |
| 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개선 및 명확화) | 제11조 통과 자유 | 통과의 자유 보장 |
| 신규도입 (세관협력) | 제12조 세관협력 | 관세법 등 위반 적발 위한 세관 간 정보교환 |

주 : 협정문 순서가 GATT 제10조, 8조, 5조 순으로 된 것은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이러한 순서로 회원국들의 제안을 접수.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일훈, 전개자료, pp.7-8.을 재인용.

3) 개도국과 최빈국의 지원과 특별대우 규정

제2절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특별대우(S&DT)규정²⁷⁾이다.

제14조~제19조는 협정상의 의무조치(제1절)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계획을 규정하며,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의무조치 이행계획(A, B, C 범주)²⁸⁾ 정의하고 있다. 이행계획을 3가지로 분류한 것은 국별로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준비상태가 상이함을 배려한 것으로서 여타 WTO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이다.

27)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WTO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도국 ‘경제개발 및 개혁 장려’를 위해서는 차별대우를 허용하고 있다.

28) Category A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 Category B는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에 이행할 의무, Category C는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 이행하며,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원조 및 기술지원을 통한 능력배양이 필요한 의무 등이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 제1절에 명기된 의무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자국의 상황을 고려, A, B, C 3가지 범주(Category)로 분류해야 하며, 이중 ‘Category A’에 포함되는 의무는 WTO에 통보하고 이행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제15조), 우리나라는 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Category A’로 분류하여 WTO에 조기 통보²⁹⁾ 하였다.

제20조는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 유예에 관한 사항으로 개도국들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의 의무이행 계획과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한 제소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Category A의 경우 의무 3년, 최빈개도국의 경우 Category A는 의무 6년, Category B/C의 경우에는 의무 8년으로 하고 있다.

제21~제22조는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원조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분야 확인 등을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2014년 7월에 출범한 개도국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지원 신탁기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 무역원활화 협정 제2절(의무이행) 주요내용

| 분류 | 조항 | 주요내용 |
|------|-----------------------------|---|
| S&DT | 제13조 일반원칙 | 개도국/최빈개도국(LDC)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S&D) 대우 제공 |
| | 제14조 의무의 종류 | A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 발효시 즉시 이행 B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 C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하며,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능력 획득 필요 * 각 개도국/LDC는 Section1의 규정을 어떤 의무로 분류할지 스스로 결정 |
| | 제15조 A의무의 통보 및 이행 | A의무의 통보 및 이행 절차 |
| | 제16조 B/C 의무의 확정 이행일 통보 | B/C 의무의 이행일 통보 절차 |
| | 제17조 조기경보체제 | B/C 의무 이행 기간 연장 |
| | 제18조 B/C 의무의 이행 | B/C 의무의 이행 절차 |
| | 제19조 B/C 의무간 이동 | B/C 의무 간 이동 절차 |
| | 제20조 분쟁해결절차 유예 | 분쟁해결절차 회부 유예 기간 부여 - 개도국 : A의무 2년 - 최빈개도국 : A의무 6년, B/C 의무 8년 |
| | 제21조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의 제공 |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 |
| |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 | 공여국, 개도국/LDC가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일훈, 전개자료, p.10.을 재인용.

29)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28일에 통보하였으며, 2014년 11월 27일 기준, 총 50개국이 ‘Category A’ 의무를 통보하였다.

4) 기관협조사항과 최종규정

제3절은 제23조 기관협정사항과 제24조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3조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운영을 위해 참가국은 WTO에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회원국별로는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표 6> 무역원활화 협정 제3절(의무이행) 주요내용

| 분류 | 조항 | 주요내용 |
|------|-----------|---|
| 제도규정 | 제23조 기관협정 | 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국별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설치 또는 유지 |
| 최종조항 | 제24조 최종규정 | 협정의 이행, GATT 1994 및 SPS/TBT 협정과의 관계, GATT 1994의 예외 및 면제의 적용, 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의 적용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일훈, 전계자료, p.10.을 재인용.

위원회는 협정 발효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이 요구된다. 제24조 최종규정에서는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고,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로부터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은 제2절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 협정체결의 의의 및 효과

1) 의의 및 효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체결은 WTO의 다자간 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DDA 협상 동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타결된 통상협상으로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국제규범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며 아울러, 발리패키지에 포함되었던 10개 합의문 중 ‘무역원활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으로서, DDA 협상 진전의 동기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세계관세기구(WCO)가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표한 교토협약(1973) 및 개정 교토협약(1999)과 같은 기존 무역원활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차원이었으나, 무역원활화협상 타결로 이러한 조치들이 규범화 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³⁰⁾

30) 고일훈, 전계자료, p.11.

우리나라는 협상 공식 개시 이후 총 22건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타결 이후에도 다른 회원국의 A의무(발효 후 즉시 이행) 통보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무역원활화 협정 관련 대상이 되는 GATT 10조, GATT 8조 및 GATT 5조에 대한 제안서를 차례로 제출하였다. 특히 협상 초기부터 단일서류접수창구(Single Window)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해당 내용이 최종 협정문에 권장형태로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는 협상 출범 이후 제출한 제안서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단일서류접수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안 초기에는 단독으로 제출했으나 이후 싱가포르, 칠레, EC 등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제출해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위험관리,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포 등 무역원활화 협정의 핵심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해 실제 협정문에 반영되었다.³¹⁾

무역원활화 협정 내용은 이미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어 국내 이행에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WTO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며, 동 협정을 통해 통관절차가 개선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이 개선되고 통관관련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 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전망이어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KIEP는 거래비용 감소로 우리나라 실질 GDP 1.5~3.9% 증가와 수출 4.3~7.4%의 증가를 예상하였다. OECD는 협정 발효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 규모를 저소득국가 14.5%, 중하소득국가 15.5%, 중상소득 국가 13.2%, OECD 국가 10%로 전망하고 있으며, ICC와 PIIE(피터슨연구소) 등은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개도국 약 5,700억 달러 선진국 약 4,750억 달러, 총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및 개도국 약 1,800만명, 선진국 약 300만명, 총 2,10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였다. WTO 특별 일반이사회는 무역원활화 협정 개정의정서와 함께 'Post-발리 작업³²⁾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DDA 협상 논의가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³³⁾

2)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절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종이문서와 함께 복잡한 서류절차 및 긴 통관시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통관업무가 국가행정전산망 6대 산업으로 선정

31) 정혜선, 전계자료, pp.3-4.

32) 남아있는 DDA 협상의제에 대한 'Post-발리 DDA 작업계획(work programme) 수립 작업을 즉시 재개해 2015년 7월까지 채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3) 고일훈, 전계자료, p.11, 한국무역협회, 전계자료, p.5.를 참조하여 작성함.

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정보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종이행정서류의 전산화, 서류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 조직개편,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³⁴⁾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무역원활화 조치를 꾸준히 이행해왔으며 세계적 수준의 세관 행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원활화협정’을 공세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에 따른 기본적인 효과인 물류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비즈니스 기회 증가와 무역경쟁력 강화, 세관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IV.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

1. 무역원활협정과 전자무역

OECD와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의 이동, 관련 정보의 흐름, 지급을 포함하여 무역원활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품표준, 적합성 평가조치, 전자상거래, 사업관행, 금융, 유통 등 무역거래가 발생하는 각 국가의 국내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다.³⁶⁾ 우리나라는 전자무역을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³⁷⁾를 말하며, 무역업무처리절차의 계약체결 전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문 중에서 전자적 서류거래 및 교환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자적 서류거래의 필요성과 활용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다루는 통관 및 관련 서류는 계약체결 후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서류

34) 관세청·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2011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통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pp.62~64.

35) 무역원활화협정은 우리나라에게 통관시스템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 가능성은 첫째,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Single Window)의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익숙한 통관시스템이 해외로 확산되면 기업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우리나라 통관시스템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기가 되어 현재까지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Uni-Pass 시스템 수출하고 세관행정 기술과 노하우도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무역원활화협정 제 10조에 규정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에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일훈, 전계자료, p.12.

36) ADB·UN ESCAP, Designing and Implementing Trade Facil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013, p.4.

3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

들로 신용장개설 및 통지업무, 수출입승인 및 요건확인업무, 수출보험업무, 적하보험업무, 원산지증명업무, 선적요청 및 선하증권발급업무, 수출입신고업무, 대금결제업무 등이다. 다음의 <표 7>에서 제1조의 정보공표 및 응답, 제2조의 의견교환, 제3조의 원산지 협정 사전심사, 제6조의 수수료 및 요금수납, 제7조의 상품의 반출 및 통관, 공과금 납부, 특송화물 등, 제10조의 수출입 및 통과관련 절차, 싱글윈도우 도입,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구, 제12조의 전자적 정보 교환의 활용 등에서 전자적 서류거래의 필요성과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표 7> 무역원대화협정과 제1절의 전자무역

| 구분 | 내용 |
|------|---|
| 제1조 | -정보공표 : 정보의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부문에서 전자통신도구 및 인터넷 제공방법을 마련하고, 협상 중 질의처와 전자통신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 제안 |
| 제2조 | -의견교환 : 인터넷이나 전자통신기술을 통해 회원국은 의견을 접수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온라인 토의 포럼이나 통관절차관련 법과 규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운영을 제안 |
| 제3조 | -원산지협정 사전심사 : WCO(2014, p.I/10)에서는 사전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종이문서형태보다는 전자서류형태의 전자신고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제안 |
| 제6조 | -수수료 및 요금 수납 :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사항으로WCO(2014, p.I/15)에서는 전자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접수된 신고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면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제고시켜 줄 것으로 제안 |
|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서류의 도착전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전자적 형태의 서류를 방식을 제공하며, 통관절차에 인터넷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증거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이문서가 현재는 필요 함 -공과금 납부 :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및 수출시 발생하는 세관에 의해 징수되는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 선택권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하며, 이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 제안 -특송화물 : 정부와 세관은 특송화물을 위한 특수 절차를 마련, 통관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도착 전 전자서류 형태로 접수, 하나의 적하목록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모든 특송화물을 신고, 이 신고는 가능하면 전자서류 형태로 받고, 서류를 최소화, 일반적으로는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을 반출, 화물의 가치나 무게에 상관없이 특송 절차를 적용, 가치가 \$200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나 세금을 받지 말고 공식적인 입국서류도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 |
| 제10조 |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 수출입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숫자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서류를 전자서류 형태로 제출하여 세관뿐 아니라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에 정보를 보내어 하나의 서류제출로 모든 서류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 -싱글윈도우 도입 :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System)과 같이 단일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각 부처간 협력체제가 취약하고, 부처간 경쟁이 심하며, 정보 비밀과 관련된 법의 문제까지도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싱글윈도우는 설립하고 운영하기가 상당히어려움이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천명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 전자적인 파일링 또는 처리를 제안 |
| 제12조 | -정보의 교환 : 정보를 요청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WTO 언어 또는 그 밖의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공하며, 종이 혹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면으로 응답한다.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유지 수준의 기술과 함께, 종이는 전자적이든, 제출된 형태의 상업 송장, 포장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 등은 서류가 진짜 사본임을 확인하며,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불필요 함 |

자료 : 관세청(2014), 고일훈(2014), 정혜선(2014),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2) 원활한 무역거래기반 제공

제2절에서는 무역업체가 무역업무처리를 위해서 전자무역이 활용되기 보다는 정부와 세관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반인 제도, 시설 및 장비, 교육 등에 관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원활한 무역거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ODA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무난한 도입 및 운영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목표는 자국 통관절차의 현대화 및 통관절차 소요 시간 감소, 그리고 안전성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상대국인 경우 통관절차 소요시간 감소, 우리나라 통관절차 기준의 국제화,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등이다. 따라서 ODA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개발도상국과 충분한 협약을 통해 상호간에 Win-Win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호이득을 여타 국가들에게 인식시키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의 협상내용에는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나 제23조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교류의 증진과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경험을 회원국과 교류하고, 제24조 최종규정과 같은 협정의 준수사항이다.

3) 정보교류 부문

전자무역을 통해 거래선 발굴부터 시작해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통틀어 지속적인 정보의 교류가 요구되며 기존에는 서신, 텔렉스, 팩스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e-Mail이 가장 신속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무역거래 과정에서 관련된 금융기관, 물류기관, 통관기관, 수출입승인기관, 신용조사기관, 거래선 발굴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전자서류가 교류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정보의 교류 부문을 살펴보면 정보의 공표 및 교환, 의견교환, 수수료 및 요금의 수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류가 전자서류를 통해 교환가능하며 이를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통관부문에서도 수출입관련 통관절차, 서류의 간소화 및 전자문서화, 싱글윈도우 도입³⁸⁾, 전자적 서류 파일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여 전

38) 싱글윈도우는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무역에 사용되는 통합된 절차와 기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글로벌 공급체인은 국내 공급체인에 통합되었고 무역, 운송과 로지스틱스 프로세스는 공급자로부터 고객까지 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다. 김창봉·이돈현, "한국 수출입관련 기업의 글로벌 싱글윈도우(Global Single Window) 활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3호, 2013, pp.90-93.

자무역의 핵심인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무역업무처리과정에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과 같은 무역 핵심서류들을 전자화, 송수신, 그리고 인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시작으로 현재 UtradeHub를 통해 무역, 물류, 은행, 마케팅, 통관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SSO:Single Sign On)기반의 통합 인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윈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무역원활화협상을 계기로 제반기술과 시스템의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³⁹⁾

2.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

1)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성과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시작은 1980년 말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무역부대비용 및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이서류와 수작업에 의해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1건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이나 요건확인기관(승인 및 추천), 세관(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 등), 보험사, 상공회의소, 검사검역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처리시간이나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통비 및 인건비, 화물보관료 등의 무역부대비용이 무역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부대비용의 절감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1991년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자동화 사업추진단을 발족한 후 1991년 KTNET으로 독립법인화 되었으며, 현재 무역업체, 은행, 관세사, 선사, 보험사, 포워드, 보세장치장 등 8만여 고객과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한 세계 최고의 무역 커뮤니티를 통해 620종에 달하는 G2B, B2B부문 수출입 문서를 전자화하여 연평균 3억6백만 건의 전자무역 문서를 처리하고 있게 되었다.⁴⁰⁾

이를 통해서 무역업체는 615종의 전자무역문서가 실시간으로 One-Stop 처리되는 국가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 서류제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와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재활용에 따른 업무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5조 9,641억 원 경제적효과, 2010년 국제무역연구원), 4만 8,000여 무역업체를 비롯한 은행, 보험사, 요건

39) UtradeHub 서비스 개념, <https://www.utradehub.or.kr/>, 2015.2.5.참조.

40) KTNET 및 KITA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확인 등 무역유관기관과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운송사 등 통관물류업체를 포함하여 총 52천여 업체가 이용 중이며, 해외에서 Doing Business 무역원활화 세계3위(2013, World Bank), 전자무역 우수사례 선정(2006, UN/CEFACT), 국가별 전자무역환경 최고수준 평가(2005, APEC), eASIA Award 수상(2003, AFACT) 등을 거두는 성과를 낳고 있다.⁴¹⁾

2) 전자무역의 역할

무역원활화를 위해 전자무역은 첫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무역 환경의 큰 흐름은 금융위기 전후의 여건변화로써 국제적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 신흥개도국 내수시장 중요성 확대, Mega형 FTA확산이다. 이를 통해 직접투자와 국제분업구조의 확산은 무역구조의 변화, 수출성과와 GDP 성장률 간 괴리,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등을 낳았고, 서비스 국제거래 비중 확대는 중간재형 서비스 거래 확대를 낳았다. 또한 WTO와 FTA 등을 통한 국제규범 확산을 통해 정책 당국의 자의적 판단 결정 영역 축소되었으며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요구되었다.⁴²⁾ 이러한 큰 틀에서 세계경제 중심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복잡화(Made in the World)로 각국 기업들이 수출보다 해외생산 증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중간재 무역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중간재 무역이 증가되면서 수출제품은 다국적 제품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2020년도에는 80%이상이 FTA를 통한 교역이 될 것으로 예측⁴³⁾되며, 시장확보를 위한 경제블록화 현상 심화로써 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아세안 협력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각축전이 본격 전개되고 있으며, FTA발효국간의 무역비중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⁴⁴⁾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한 기술 융복합화와 정보화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신기술 발달, 기술간 융합 등으로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융복합 기술이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⁴⁵⁾ 이처럼 물적교류의 급증과 관련 자료의 급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자무역시스템의 개발과 연결이 요구된다.

둘째, 글로벌 교류강화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은 2020년 무역 2조달러 달성과 무역 5강

41)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활성화, 정책·정보 브리핑, <http://www.motie.go.kr>, 2015.2.5.참조

42) 이시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어떻게 봐야 하나?”, KDI 국가정책과정, 2014, p.4.

43) 김영춘·류건우,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v.16, no.1, 2014, p.92.

44) TradeNAVI, 세계FTA 추진개황에 따르면 1991년 17% → 1995년 29% → 2004년 40% → 2011년에 48%로 증가하고 있다. <http://www.tradenavi.or.kr/>, 2015.2.6.참조

45) 지식경제부, - 20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이어-“2020년까지 무역 2조달러시대 연다”,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보도자료, 2012년 2월 3일, p.5.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업체와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주요 협회·단체, 유관기관들도 대거 참여해 실천 방안 발굴중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총 1조 981억달러로 수출 5,726억달러, 수입 5,255억달러로 향후 6년 내 이 규모를 두 배 가까이 키워야만 무역 2조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단체, 그리고 업계는 WTO와 FTA를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 전자상거래 시대 확산과 전자무역플랫폼을 통한 전반적인 무역 확대와 같은 국가 IT인프라활용,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독일통일 사례를 검증하여 통일한국 시너지 등과 같은 성장모델을 통해서 무역 2조달러 달성의 키워드로 삼고 있다.⁴⁶⁾ 우리나라 무역 2조달러 추진전략중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통해 무역금융·인력·전사·전자무역 선진화 및 무역안정망 구축전략이 WTO, FTA, 무역2조달러 달성 전략에서 요구되는 항목이다.⁴⁷⁾ 따라서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연계⁴⁸⁾ 및 영역의 확산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무역 프로세스는 오는 2020년 e-Trade 3.0시대를 개막하면서 무역을 전문지식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거래의 수준으로 보편화시키면서 무역의 생활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Trade 3.0 시대의 무역프로세스는 무역계약의 사전단계인 해외시장 조사 및 거래선 발굴과정과 사후단계인 무역계약의 이행 및 대금결제·회수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절 없는(seamless)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 글로벌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 전자무역시스템인 유티레이드허브(uTrade Hub)와 통관·물류망의 실시간 연계와 해외 전자무역 시스템과의 연계 등 서비스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⁴⁹⁾

3) 전자무역의 과제

수출입관련기업들은 관세와 비관세장벽과 같은 형식적인 무역 장벽이 제거되거나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다른 국가의 수출입 규정과 통관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요구되며, 상품이 한 국가로 반입되는 지점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red tape)가 제거될 것이라며, 통관업무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 간편, 그리고 저렴하게 수행되어지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46) 김승규, 무역 2조달러 로드맵...전자무역·서비스·중기수출·통일이 핵심 아젠다, etnews, 2014.4.21.

47) 지식경제부, 전개자료, p.4

48) 현재 KINET은 국제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해외파트너사 및 정부·유관기관과 적극적인 국제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공적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KINET은 전자무역 컨설팅 사업에서부터 관세행정현대화 사업과 같은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한 Single Window 구축까지 전 세계 전자무역 확산을 추진중이다. 특히, 시스템 개발과 확산, PAA 및 ASEAL 참여, 한·중 및 한·대만 전자무역 민관협력 공조체제 마련. KINET, 글로벌전자무역, <http://homepage.kinet.co.kr/KINET/biz/global.html>, 2015.2.16.참조.

4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의 향후 10년 서비스·녹색·FTA·전자무역에서 찾는다』,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12. 1.17, p.3.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991년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전자무역인프라의 구축, 관련기관 및 업체들간의 거래의 표준화 작업,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무역의 제1효과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다수의 연구와 사례⁵⁰⁾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자무역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무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투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을 9개국에 수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무역 도입국과 전자무역인프라, 표준화, 법적·제도적 교류를 증진시켜 시스템의 수출뿐만 아니라 관세행정의 표준화를 마련하여 국내기업들이 상대국 세관업무에 대한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GATT 제5,8,10조 관련 다수의 단독 및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관련 워크숍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일서류접수창구(Single Window), 반출시간측정(Time Release Study), 위험관리(Risk Management)등 분야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협상에서 제기되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수료 및 요금 등 5개 분야에서 공동제안국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국내의 보급·확대가 요구되며,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기구간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제안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통적으로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의 기본인프라, 즉 통상관련 정책의 규제 집행 및 행정과 관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그러나 WTO 도하라운드 협상에서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로 정의하고, 그 논의를 GATT협정의 제 V조, 제VIII조, 제X조 내용만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 11월 27일에 WTO 특별 일반이사회는 발리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무역원활화협정(TFA) 발효를 위한 개정의정서를 채택

50) 2010년 3,700여만달러에 UNI-PASS시스템을 수입한 에콰도르는 2013년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관세혁신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8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관 업무 처리기간이 평균 2~3일에서 30~40분으로 단축되어 관세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있다. 자료: 안병욱, “콜롬비아 조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방안 협의-콜롬비아 조세청 서비스 박람회 참석,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시 기대효과 발표, 관세청 보도자료, 2014.11.6, pp.1-3.

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2015년 1월1일 기준 49개국과 11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서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 문제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조건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무역 2조달러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중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2014년 11월 27일 채택된 WTO 무역원활화협정(ATF: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의 배경, 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전자무역은 무역거래 전 분야에 활용될 뿐만아니라 국제간의 교류를 통한 효과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전자무역의 역할은 정보의 교류 부문에서는 정보의 공표 및 교환, 의견교환, 수수료 및 요금의 수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류가 전자서류를 통해 교환되며 활용이 권고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관관련부문에서도 수출입관련 통관절차, 서류의 간소화 및 전자문서화, 싱글윈도우 도입, 전자적 서류 파일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여 전자무역의 핵심인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협상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무역원활화에서 정보와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의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FTA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전자무역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개발 및 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무역금융·인력·전시·전자무역 선진화 및 무역안정망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글로벌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확산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증진시켜야 함을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와 마찬가지로 다시한번 역설하며, 본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역할에 대한 방안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국제간 연결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무역관련 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상호교류와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제안들을 거듭하여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역원활화협정 중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관 및 관련서류의 신속화를 통한 통관물류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적인 계획·집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환경에 기업과 국가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을 향후 연구방향으로 한다.

참 고 문 헌

- 고일훈,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14-015, 2014.12.
- 고준성,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KIET 산업경제, 2002년 1월호, 산업연구원, 2002.
-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2014.11.
- 관세청·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2011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통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 김상겸·박인원,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효과”, 정책연구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김선옥,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원활화 추진”,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 김승규, 무역 2조달러 로드맵...전자무역·서비스·중기수출·통일이 핵심 아젠다, etnews, 2014.4.21.
- 김영춘·류건우,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v.16, no.1,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 김태영·안경재, “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39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14.
- 김창봉·이돈현, “한국 수출입관련 기업의 글로벌 싱글윈도우 (Global Single Window) 활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 류병윤, 전개논문“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홍익법학 15권 3호, 2014.
- 박순찬·박찬일, “동아시아의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동북아시아경제연구』, Vol.25. No.2. 한국동북아시아경제학회, 2013.
- 신정환, “무역원활화와 세관의 역할 및 발전전략”,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양준석, “WTO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투명성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5.
- 양준석,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6.
-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 한국관세학회, 2006.
- 이명현 외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이시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어떻게 봐야 하나?”, KDI 국가정책과정, 2014.
- 임혜준,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의 주요 의제와 쟁점”,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 정문현, “무역원활화가 상품의 특성별 무역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Vol39. No.2, 한국무역학회, 2014.
- 정재완 외,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한국관세학회, 2014.
- 정혜선,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공식 개정의정서 채택과 기대효과”,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77, 한국무역협회, 2014.12.16.
- 조상현, 제현정, 홍지상, “2011년 수출입 평가 및 2012년 전망”, 「IIT Trade Focus」, Vol.10 No.58, 한국무역협회, 2011.12.
- 지식경제부, - 20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이어-“2020년까지 무역 2조달러시대 연다”,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보도자료, 2012년 2월 3일.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의 향후 10년 서비스·녹색·FTA·전자무역에서 찾는다」,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12. 1.17.
- KOTRA,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KOTRA 통상전략팀, 2004.9.
- Staples, Brian Rankin. Trade Facilitation: “Improving the Invisible Infrastructure.” In B. Hoekman, A. Mattoo, and P. English (eds)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Washington, D.C.: World Bank. 2002.
-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 2001.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 ADB/ESCAP(<http://www.unescap.org/>)
- KTNET(<http://www.kenet.co.kr/>)
- UtradeHub(<https://www.utradehub.or.kr/>)

ABSTRACT

A Study on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nd
Rolls of e-Trade

Jang-Ho, Kim* · Kwan-Seo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role of e-trade for trade facilitation, which was the conclusion of November 27, 2014 which is based on the main discussions and content of the WTO. This study examines the data collec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data, and it proposed a policy direction using it.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lso contains a number of e-Trade related information and internet-based electronic documents can be sent very quick flow of information and it can save time and cost concerning parties. e-Trade is a very important basement and it is needed to continually develop and exchange for trade facilitation. To make easy trade facilitation, e-Trade i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teadily develop e-trade technologies for trade facilitation and to continuously exchange e-trade system for easy customs services in concerning countries to maximize these effects.

Key Words :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e-Trade, WTO, FTA,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Completion of Doctorate Cours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sun University